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훈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4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1월 31일
발 의 자: 김경훈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옥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 김지향, 김형재, 김혜영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아이수루, 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 이경숙, 이상욱, 이영실, 이종태, 정준호, 최민규, 홍국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상 노후·불량건축물에 대한 판단 기준의 미비로 인해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실정임.
- 이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층별 구조가 다른 건축물인 경우 어느 한 구조의 경과 연수가 기준에 충족되면 해당 건축물을 노후·불량건축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노후·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을 추가함(안 제4조제1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 건축물은 어느 한 구조의 기간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건축물을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